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48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박지원 · 이개호 · 소병훈

김종민 · 김 윤 · 전은수

권향엽 · 박해철 · 장종태

채현일 · 박군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민간인 집단희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음. 그러나 법률상 공소시효 특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 사건에 한정되어 있어,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이러한 사건은 국가기관이 직접 관여하거나 장기간 은폐·조작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유족이 손해 및 가해 사실을 적시에 알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음. 헌법재판소도 2018년 이러한 과거사 사건에 객관적 기산점에 따른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그 취지에 따라 판결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

또한, 과거사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그 보호를 정신적 손해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손해로, 5·18민주화운동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과거사 사건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아울러, 위원회 활동기간 경과 등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못한 사건이라도 법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과 권리행사 장애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위원회 결정 유무와 관계없이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더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형사상·민사상 특례를 적용받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과거사 사건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과거사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5조).

마.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안 부칙 제4조).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 및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와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과거사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원수탁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2.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범한 「군형법」 제62조의 죄(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범한 「형법」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및 「국가보안법」 제12조의 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② 이 법에서 “과거사 사건”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중 제1항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진상규명 또는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결정·심사·조사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

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과거사 진상규명 또는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

3. 국가기관 등이 조직적·반복적으로 관여한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집단희생, 은폐 등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하여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등 헌법상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이 해당 소송절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자의 조직적이거나 이에 준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등 헌법상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그 침해 사실의 은폐·조작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이 법에서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과거사 사건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과거사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6조제1항·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위로금 등 금전급부에 대한 성격과 지급 목적을 고려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과거사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 유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